

## 학생지도교수제 운영규정

2009.03.01. 제정

2023.02.16. 개정

2024.05.22. 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도교수의 종류)** <삭제 2023.02.16>

**제3조(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수)** 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4조(지도교수의 신청)** ① 학생들의 지도교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 학기 개강 후 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 3인을 1순위, 2순위, 3순위로 정하여 신청하도록 한다.

② 학생들의 지도교수 신청 전에 지도교수 대상자의 세부전공, 학문적 배경, 경력, 사회봉사활동 등의 자료를 홈페이지 및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학생부원장과 참법률가지도센터장은 지도교수 신청기간 전에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지도교수 신청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.

<본조 전문 개정 2023.02.16>

**제5조(지도교수의 배정)** ① 학생부원장은 개강 후 4주 이내에 학생의 신청을 고려하여 지도교수 1인당 각 학년별 4인 이하의 지도학생을 배정한다. 단, 원장, 연구년 대상자, 재직 잔여학기 1학기 이하인 교수, 기타 사유로 학생지도 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교수는 신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2.16>

② 지도교수 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신입생에 대하여 학생부원장이 지도교수를 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2.16>

③ 학생들의 지도교수 신청이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신청지도교수를 우선하고, 동일순위 신청지도교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학생부원장이 원장·교무부원장·참법률가지도센터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. <개정

2023.02.16>

**제6조(지도교수의 변경)** ① 학생들은 제5조 제1항의 한도 내에서 지도교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2.16>

② 제1항의 변경신청은 2회 이내로 제한한다. 다만, 지도교수가 연구년 및 정년퇴임 대상자이거나 제4항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3.02.16>

③ 지도교수의 변경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학생부원장이 원장·교무부원장·참법률가지도센터장과 협의하여 변경한다. <개정 2023.02.16>

④ 지도교수의 불가피한 사정 등 특별한 사유로 제7조의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학생의 신청이 없더라도 원장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 <신설 2023.02.16>

**제7조(지도교수의 의무)** ① 지도교수는 매학기 지도학생 1인당 1회 이상 대면 지도를 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5.22.>

② 지도시간에는 집단지도 시간도 포함된다. <개정 2024.5.22.>

③ 지도교수는 모든 지도학생이 지도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5.22.>

**제8조(학생지도의 계획)** 지도교수는 학생들과의 친밀감 증대와 내실 있는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생들과 실무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모임을 주선하여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노력한다.

**제9조(학생지도 활동의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)** ① 지도교수는 학생지도의 결과를 레인보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② 학생지도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한다. 다만,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도교수 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지도학생이 배정된 것으로 취급하고 지도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3.02.16>

③ 학생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도교수의 학생지도에 대하여 평가하고 학생부원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 다음 학년도 학생지도활동에 반영하도록 한다.

④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우수지도교수로 평가된 지도교수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3.02.16>

제10조(지도비) 학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지도비 또는 학생지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. <개정 2023.02.16>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1. 2. 23. 전문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들은 지도교수 선택제에 따른 진로 지도교수만 배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개정 2023.02.16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개정 규정 중 제5조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중 제5조(지도교수의 배정)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 <개정 2024.5.22.>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.3.1.부터 시행한다.

## 학생지도교수 배정(변경)신청서

소 속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span>중앙대학교</span> <span>법학전문대학원</span> </div>		
학 번		성 명	
연락처 (휴대폰)			
E-mail	@		
희망지도교수	순위	교수명	
	1		
	2		
	3		
사유			
신청일자	년    월    일		
신청인	(인)		

